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병운 위원장님!
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

- 최근 급격히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(Personal Mobility Devices, PMD) 이용으로 공유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, 이에 따른 무질서한 방치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방해받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, 다른 교통수단의 통행에도 장애를 초래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을 방지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,
-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과 구청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, 보관하는 조치에 대한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